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9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3. 31.

다. 회부연월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중앙 단위의 사후적 지도·감독 비중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은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자치감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89조의2(자치감사위원회 설치)</u> <u>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u> <u>③ 자치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u> <u>④ 위원장은 자치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치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u>

한다.

⑤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시·도의 경우에는 2명은 시·도지방의회에서, 2명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자치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⑨ 그 밖에 자치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¹⁾ 외에 자체 감사기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에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에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며, 해당 자체감사기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1)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다.

1.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85조, 제190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또한, 「공공감사법」 및 「공공감사법 시행령」은 합의제감사기구 위원
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의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데,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중 12개는 합의제감사기구를 두고, 4개는
독임제 감사기구를 두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227개 중 3개는 합
의제 224개는 독임제 감사기구를 설치·운영 중임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
로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
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이하 “합의제감사
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의제감사기구를 대표하고, 합의제감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의제감사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의제감사기
구의 의견을 들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합의제감사기구가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가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설치현황>

(단위: 개)

	독임제 감사기구	합의제 감사기구	전체
광역시자체	4	12	16
기초지자체	3	224	227
합계	7	236	243

※자료: 행정안전부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장의 직무, 사무국, 자치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위원의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및 감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특별자치도 및 통합특별시의 감사위원회 관련규정>

	규정 내용
설치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7인이내 (제주:3인 의회추천, 1인 교육감 추천 전북·강원: 의회 및 교육감 각 2인 추천 전남광주: 2인 의회추천, 1인 시민사회 추천)
위원선정절차	지자체장이 임명·위촉

	(위원장의 경우 의회 동의 필요)
사무국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
자치감사계획	감사 수행 전 자치감사계획 수립 30일 전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 통보
감사결과처리	감사 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보고
비밀유지, 신분보장	공무원 아닌 위원의 비밀유지 및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 마련
정치운동금지	정치운동 금지 조항 마련

개정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감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자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공공감사법」의 비교>

	개정안	공공감사법
자치감사위원회 설치	재량	위원회 형태는 재량 (단, 자체감사기구설치는 의무)
독립성 관련규정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	감사기구의 장의 감사활동 시 독립성보장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개방형직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개방형직위)
위원장의 임명절차	지방의회동의 거쳐 지자체장이 임명	지자체장이 임명
위원장의 임기	3년	5년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함. 단 최소 2년보장
위원 임명	지자체장 임명 단, 2인 지방의회 추천	지자체장 임명

	시·도의 경우 의회 2명·교육감 2명 추천	
사무기구	위원장이 추천하여 자자체장이 임명한 일반직·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기구를 둠	별도규정 없음
구성 및 운영사항 등	조례로 정함	「공공감사법」 및 시행령 등에 자체적으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자자체장이 정함
세부사항	자치감사위원회 의결 후 위원장이 정함	

다만, 현재 「공공감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에 자치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실질적인 필요성과 「공공감사법」과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과 「공공감사법」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자치감사기구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구성 및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 양 법률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양 법률 간 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자치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에 따라 직접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공

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의 경우 감사기구는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명령, 징계·문책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해당 처분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 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⁴⁾.

아울러 개정안은 자치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또는 자치감사위원회의 의결에 위임하고 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등 감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의 직무, 감사결과의 처리,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및 정치활동 금지 등 위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자치감사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법」과의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조례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교육부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범위에서 교육·학예 분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예컨대 “그 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치감사위원회”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시도지사협의회는 감사기구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고, 청주시는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